삼정 KPMG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April 03, 2025

삼정 KPMG TAX 6 본부는 이전가격 및 관세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글로벌 관세/국세 통합 자문팀을 운영하며 Operational TP, Micro Supply Chain Management, 실시간 국제 동향 모니터링을 포함, 기업의 관세 및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美 트럼프 대통령의 급변하는 관세 정책 동향을 긴급으로 분석하여 공유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한 '최소 10%' 추가 상호 관세 부과 발표 (2025 년 4 월 2 일)

1.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美 현지 시간 4 월 2 일, 트럼프 대통령은 ▲(4 월 5 일 동부표준시 오전 12 시 01 분 이후) 미국으로 소비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들에 대하여 "보편적 종가세율(10%)"을 추가 부과하고, ▲(4 월 9 일 동부표준시 오전 12 시 01 분 이후) 미국으로 소비를 위해 수입되는 특정 국가 수입물품에 대해 무역 균형도를 고려한 "국가별 차등 종가세율(11%~50%)"을 추가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하였습니다.

조치 구분	대상 국가	상호관세율	부과 개시일
보편적 조치	모든 국가	10%	4 월 5 일 EST 12:01 A.M. 이후 선적分
국가別 차등조치	Annex II 포함 국가	11%~50% (한국: 25%)	4 월 9 일 EST 12:01 A.M. 이후 선적分

** (예시)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은 4 월 5 일 EST 12:01 A.M. 이후 선적分에 대해 (보편적 조치에 따른)10% 종가세율 "추가" 적용 → 4 월 9 일 EST 12:01 A.M. 이후 선적分부터는 (국가別 차등조치에 따른)25% 종가세율 "추가" 적용

同 행정명령에 따른 상호관세는 기타 모든 관세, 수수료, 세금, 부과금, 또는 기타 요금에 "추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존 관세율 (예: 한미 FTA 특혜세율 또는 MFN 세율)에 더하여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 제외) 금번 행정명령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단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50. U.S.C. 1702(b) 대상 물품: 정보 출판물, 인도적 목적의 식량, 의약품, 의료기기 등
-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 부품 중 이미 Section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품목
- 추후 Section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될 품목 (e.g.구리, 제약, 반도체, 목재 등)
- 미국 품목분류(HTSUS) 상 Column 2*에 분류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
  (*) 미국과 Normal Trade Relation에 있지 않은 국가로 현재 기준 북한, 벨라루스, 쿠바, 러시아 4개국이 해당

(미국산 부품 사용 특혜 조치) 금번 행정명령에 따른 상호관세는 수입물품의 전체 과세가격을 기초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물품의 "미국산 포함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미국산이 아닌 부분(Non-U.S. content)에 대해서만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산 포함 비율(U.S. content)"이란, 미국에서 완전히 생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된 부품의 가치를 의미)

따라서, 미국에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물품 內 포함된 미국산 포함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상호관세의 영향을 일부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입 품목의 미국산 포함 비율을 확인 및 검증하기 위해, 수입 신고 시 관련 정보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비고
미국산 포함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수입물품 가격 – 미국산 가치	사후검증 대비 필요
미국산 포함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수입물품 가격	

(부과 개시일 이전 선적分 예외 조치) 금번 행정명령에 따른 상호관세는 각각 부과 개시일 이전에 선적되어 운송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의 재고현황을 고려하여 조기 선적 등을 통하여 상호관세 부과의 영향에서 일부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KPMG 권고의견

(미국법인의 손익 등에 대한 영향 분석 필요) 금번 '(최종)25%의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에 소재한 법인에게 수출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서 미국법인은 "물품신고가격의 25%"의 관세에 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미국법인의 급격한 매출원가 증가로 인해 판매가격 상승, 판매수량 감소, 손익 감소 등 많은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내 제도 활용 검토 필요성) 미국에서는 CBP(관세국경보호청, 미국의 관세청)의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이전가격에 대해 국세와 관세를 모두 고려한 방안' 및 '수입자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등에 따른 수입신고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PMG 는 미국 내 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고관세율의 추가 부과에 따른 한국 본사 및 미국법인의 손익 관련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이전가격 조정금액→수입물품 FOB단가 반영)** 'APA합의에 따른 이익률' 또는 '물품별 관리가능한 TP Policy'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금액을 수입물품의 FOB단가에 반영(인상/인하) 할 수있는 방안
- **(수입신고방법 – Reconciliation)** 수입신고가격을 물품의 수입시점 당시의 가격이 아닌 수입 후 '최대 21개월 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제도

관세 부과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이전가격 정책, 간접세 효과, 품목별 Operational TP 관리 등 다양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3.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주요 내용의 요약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개요(요약)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원문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 설명	비고
과세요건	과세 표준		수입가격 (ad valorem)	
	과세물건	A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B	<부속서 I 에 열거된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관세율	A	10%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B	부속서 I 에서 정한 차등비율[1] (한국 25%, 부속서 I 에 열거된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부속서 I 참고
적용 시기		A	2025 년 4 월 5 일 EDT 12:01 a.m. 이후에 소비를 위하여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위하여 반출된 물품. (단, 2025 년 4 월 5 일 EDT 12:01 a.m. 이전에 선적되어 최종 운송 중인 물품 부과 대상에서 제외)	
		B	2025 년 4 월 9 일 EDT 12:01 a.m. 이후에 소비를 위하여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위하여 반출된 물품. (단, 2025 년 4 월 9 일 EDT 12:01 a.m. 이전에 선적되어 최종 운송 중인 물품 부과 대상에서 제외)	
부과 방식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수수료, 세금, 징수금, 요금에 추가 부과. 단, 캐나다 및 멕시코産 물품에 대한 10%, 25% 추가관세 부과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본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아니함. (한편, 캐나다 및 멕시코産 물품에 대한 10%, 25% 추가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도 USMCA 적용물품은 상호관세 부과대상 아니며, 추가 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된 USMCA 미적용 물품은 12% 종가세가 부과됨)	
기타조항	부과 제외	(i)	50. U.S.C. 1702(b) 대상 물품(예: 정보 출판물, 인도적 목적의 식량 등)	
		(ii)	1962 년 무역 확장법 232 조에 따라 부과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과 그 파생품	
		(iii)	1962 년 무역 확장법 232 조에 따라 부과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 Sec. 2. Reciprocal Tariff Policy.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rebalance global trade flows by imposing an additional ad valorem duty on all imports from all trading partner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herein. The additional ad valorem duty on all imports from all trading partners shall start at 10 percent and shortly thereafter, **the additional ad valorem duty shall increase** for trading partners enumerated in Annex I to this order **at the rates set forth in Annex I to this order**. These additional ad valorem duties shall apply until such time as I determine that the underlying conditions described above are satisfied, resolved, or mitigated.

		(iv)	부속서 II에 명시된 기타 제품(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특정 핵심 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등)	부속서 II 참고
		(v)	美 관세율표 컬럼 2 세율이 적용되는 무역 상대국(북한, 러시아, 벨라루스, 쿠바)의 모든 품목	
		(vi)	향후 1962 년 무역확장법 232 조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	
	미국산 부품 사용分 특혜		수입가격의 20% 이상이 美역내 제품가치(U.S. content)를 포함하는 경우, 비역내 제품가치에 대해서만 상호관세 부과. (**U.S. content 란, 미국에서 완전히 생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된 부품의 가치를 의미)	
	보세 가공		미국 외국무역지구(FTZ)에 입국하는 경우 특권 외국 지위(privileged foreign status)로 수입되어야 함. (즉, FTZ 內 가공이 이루어지기 전의 형태로 관세 부과됨)	
	중국 저가치 수입		4/2 일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른 중국産 저가치 수입 물품은 금번 명령 부과 대상 제외	
	소액 면제 가능		면세규정 (A-우편 등, B-여행자물품) 유효 /, C(개인용물품)은 일정기간만 유효	
	명령 우선 적용		본 명령의 지시에 상반되는 모든 이전 대통령 선언 등은 필요 한도 내에서 변경	
	추가 조치		상무부 장관, 미 무역부(USTR) 대표 등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추가 조치 제안 가능	
	보복조치		무역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대통령은 추가 부과 조치 가능	

원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regulating-imports-with-a-reciprocal-tariff-to-rectify-trade-practices-that-contribute-to-large-and-persistent-annual-united-states-goods-trade-deficits/

Key Contacts

삼정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